

의안번호	2203358
의 퇴 인	김용태 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계번호	24C330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범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포함시키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¹⁾에 따른 접경지역은 인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 지역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²⁾³⁾은 '24년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등의 일부 지역임

- 다만, 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⁴⁾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은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포함되는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중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옹진군(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과 경기도의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접경지역), 가평군(인구감소지역), 연천군(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임
- 대학알리미의 '24년 학교개황 자료에 따라 작성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아래와 같음

-
-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2024.02.27.)
 - 1.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천 (총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 2개)	가평군, 연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중 인천, 경기지역 발췌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대학⁵⁾

소재지	학교명	학제	구분
인천 강화군	인천카톨릭대학교	대학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경기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접경지역
경기 김포시	김포대학교	전문대학	접경지역
경기 파주시	웅지세무대학교	전문대학	접경지역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	접경지역
경기 고양시	농협대학교	전문대학	접경지역
경기 양주시	서정대학교	전문대학	접경지역
경기 동두천시	신한대학교	대학	접경지역
경기 포천시	대진대학교	대학	접경지역
경기 포천시	차의과학대학교	대학	접경지역

주: 대학알리미의 '24년 학교개황 자료에서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추출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범위가 확대되어 법 전반에 걸쳐 정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법 제5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법 제6조)의 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법 제8조)의 심의 내용, 해외교류·연수 균등 기회 보장 범위 등(법 제11조),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대상(법 제12조),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상(법 제13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우대 채용되는 범위(법 제14조), 대학원 입학 기회 확대 대상(법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 확대(법 제16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가능 대학 확대(법 제17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협의·조정 사항(법

5) 대학알리미의 '24.3.기준 학교현황 자료에서 경기·인천 중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본교 및 분교의 주소지를 소재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제19조), 고용영향평가 내용 변동(법 제20조), 협업체계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 확대(법 제21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대상 확대(법 제22조) 등 법 전반에 걸쳐 정책 대상 확대가 예상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산상 변화가 크지 않을 규정도 있으나, 법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및 법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법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도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⁶⁾,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국토교통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산업통상자원부), 교육발전특구(교육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⁷⁾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범위 변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변화 가능성 및 규모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6) 비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지역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6개 플랫폼과 2023년 3개의 신규 플랫폼 등 총 9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전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비 총 342,000백만원이 예정됨

7) 참고로, 교육부는 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방대학의 과감한 혁신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지정된 10개 글로벌대학(대학수 기준 14개교)을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였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